

# 상담센터

## 1. 통계 상담센터 소개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통계상담센터는 응용통계학과 교수진과 박사급 연구원을 중심으로 통계이론 및 이를 이용한 여러 응용 방법론을 연구합니다. 또한 통계학 및 이와 관련 되는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 공간으로서 학구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통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합니다.

상담분야로는 경영, 경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과학과 교육학은 물론 자연과학, 의학, 공학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의뢰를 받습니다.

상담실 : 단국대학교 미디어센터 405호  
e-mail : dkustat@dankook.ac.kr

## 2. 상담윤리

단국대학교 통계상담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통계문제를 수용하지만 통계상담 의뢰인의 비윤리적인 의뢰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중인 교과목의 평가 과제의 일부를 상담으로 맡기거나 학위논문의 대행 또는 대필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논리를 강변하기 위한 편향된 자료를 편향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의뢰하는 경우 등의 상담 행위는 중단됩니다. 통계상담자는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에 응할 것입니다.

### 3. 상담절차 및 상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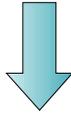
#### 지원 내용

연구설계 : 연구디자인 설계, 프로젝트 계획서 개발 상담, 논문심사 답변 상담 등  
연구분석 : 자료수집/입력방법 상담, 표본수 산출, 통계분석 및 결과해석 등

####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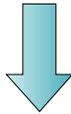
##### 접수

dkustat@dankook.ac.kr 로 [상담신청서 다운로드](#)를 전송하여 접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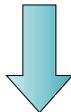
##### 연락

3일내로 접수 및 확인 메일 발송해 드리고 방문상담 일정을 논의합니다.



##### 상담진행

진행 기간은 상담 후 약 2~3 주일 소요되며  
지원신청 순서에 따라 처리되고 지원신청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처리소요기간이  
연장됩니다.



##### 완료

상담결과는 전자메일로 발송되며 통계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분석 가능합니다.

## 상담료 산정기준 (단국대학교 내부 의뢰 기준)\*

### 1. 단국대학교 내부 의뢰의 경우

- \* 최소금액 : 100,000원 (실 분석시간 5시간 이내)
- \* 산정금액이 1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100,000원의 상담료 부과

### 2. 추가상담료 (실 분석시간 5시간 초과)

단국대학교 내부 의뢰의 경우 시간 당 20,000원 기준 적용

- \* 단국대학교 외부 의뢰의 경우 50% 추가

## 4. 규정

### 통계 상담센터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센터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통계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통계학 전반에 걸친 이념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통계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조 직

제3조(기구) 본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전문연구실장 1명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응용통계학과의 전임교수 중에서 융합사회연구소에서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며 상담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전문연구실장) ① 실장은 원칙적으로 통계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실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제4조(사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09.3.1.’ 11.9.26 개정)

- ① 교내외 통계상담 및 공개강좌를 통한 통계의 보급
- ② 통계학의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 활동 수행
- ③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무형 또는 융합형 인재 양성

#### 제 3 장 연 구 원

제6조(연구위원) ① 연구보조원은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부과정 3학년 이상 학생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용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 제 4 장 재 정

제7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상담 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총당한다.  
제8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